

서울고등법원

제 10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나2071551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더부페
피고, 항소인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제 1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6가합110268 판결
변 론 종 결 2018. 5. 18.
판 결 선 고 2018. 6. 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6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7일이 지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의 설립과 이 사건 사업의 추진

1) 피고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피고 B'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는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D 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기 위하여 2010. 5. 12. 특수목적법인인 피고 A(대표이사: C)를 설립하였다.

2) 피고 A는 2010. 11. 17. 서울시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사업권을 획득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

1) 원고는 2010. 4. 28. 피고 B에게 피고 A 설립자금 용도로 1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대여)

원고는 피고 B가 서울시 도봉구 E에 추진하고 있는 공연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 전담 법인 설립자본금 출자에 필요한 자금 1억 원을 본 협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 B에 대여한다.

제2조(우선협상권 부여)

- ① 피고 B는 제1조 금전대여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해당 공연장 내에 앞으로 조성될 근린생활시설 점포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우선협상권을 부여한다.
- ② 해당 점포의 취급 품목은 원고가 현재 영업 진행 중인 것으로 하며, 대공연장 4층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의 임대차 면적 및 조건에 대해서는 추후 양사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상환)

- ① 피고 B는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조건이 2010년 6월 30일까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2010년 6월 30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일수에 연이율 10%를 적용하기로 하고, 그 이전에 상환할 경우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 ② 피고 B는 법인 설립 및 서울시로부터 사업권 획득이 완료될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에 상기 대여금으로 확보한 피고 B의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거나 해당 금액을 차입금 상환해야 한다. 차입금을 상환할 경우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2) 원고는 피고 A가 위와 같이 사업권을 획득하자, 2010. 12.경 위 협약에 따라 위 대여금 1억 원에 해당하는 피고 A의 주식 2만 주(= 1억 원 ÷ 액면가 5,000원)를 취득하였다.

3) 이후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으로 피고 A에게 5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 A의 주식 10만 주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9. 30. 피고 B가 지정하는 피고 A의 기존 주주 한일티앤씨에 5억 원을 송금하였고, 2011. 10.경 한일티앤씨가 보유한 피고 A의 주식 10만 주를 양수하였다.

다. 원고의 투자금 등 반환 약정

1) 피고 B가 원고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기로 한 위 근린생활시설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하겠다고 하자,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대여금과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2) 피고 A는 씨제이이엔엠으로부터 1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씨제이이엔엠이 출자자의 지분을 정리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원고를 포함한 출자자들로부터 보유주식을 액면가로 취득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2013. 7. 1.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와 같이 취득한 피고 A 주식 합계 12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2013. 7. 1.자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갑[피고 A]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고, 을[피고 B]은 갑의 운영출자자이자 최대주주이며, 병[원고]은 이 사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갑의 주식(12만 주, 액면가 5,000원, 총 6억 원)을 인수하여 그 지분을 출자한 투자자이다.
2. 갑은 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시점에 병이 인수하였던 위 주식 전량을 1주당 5,000원(총 6억 원)에 책임지고 매수할 것임을 확약한다.
3. 병은 갑에게 위 주식의 재매수를 요청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갑은 병으로부터 위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식 전량을 매수하여야 한다.
4. 을은 갑의 위 2항 및 3항의 지분매수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한다.

3) 그러나 씨제이이엔엠의 피고 A에 대한 투자가 결렬되었고, 서울시는 2013. 10. 30.경 이 사건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피고 A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였다.

4)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서울시에 대체사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 금융기관인 미래에셋증권 등은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할 대체사업자를 물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B는 주주 단일화를 위하여 피고 A의 주식을 모두 양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 B는 2014. 4. 1.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양수계약(이하 '2014. 4. 1.자 약정'이라 한다, '2013. 7. 1.자 약정'과 '2014. 4. 1.자 약정'을 모두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날 원고는 피고 A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피고 B(이하 '을'이라 한다)는 A(이하 '본건 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2014. 4. 1.자로 다음과 같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의 목적물)

갑은 갑이 보유한 본건 회사 발행의 보통주식 120,000주(액면가: 5,000원, 지분율: 8.6%, 이 사건 주식)를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 사건 주식을 갑으로부터 양수한다.

제2조(매매대금)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은 금 육억(600,000,000)원이다.

제3조(매매대금의 지급)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6월이 경과한 2014. 10. 31. 갑에게 제2조 소정의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제4조(주식양도의 통지)

갑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체 없이 본건 회사에게 제1조에 기재된 이 사건 주식이 을에게 양도되었음을 [별지]와 같은 양도통지서(확정일자부)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5) 한편 피고들의 대표이사였던 C은 피고 A 주주들의 이해관계 정리를 위하여 작성한 메모(갑 10호증의 2)에 '원고는 사업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실투자금 6억 원을 회수하고 빠진다는 원칙'이라고 기재하였고, 원고에게 위 투자금을 반환하는 것을 전제로 협의 등을 진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을 1 내지 3호증, 을 5호증, 을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6억 원을 대여 또는 투자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취득하

였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투자금 또는 대여금 6억 원을 반환하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라 6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A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의 2013. 7. 1.자 약정은 자기주식 취득 약정에 해당되어 무효이고, 피고 B의 연대보증도 무효다. 뿐만 아니라 2013. 7. 1.자 약정은 그 전제가 된 씨제이이앤엠의 100억 원 투자가 무산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다.

2) 피고 B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내용의 2014. 4. 1.자 약정은 신규 사업주체가 피고 A의 주식 등을 양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피고 A의 주식 등의 매각이 실패하였으므로 2014. 4. 1.자 약정은 실효하였다.

3. 판단

가. 2013. 7. 1.자 약정에 따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

1) 주식회사가 자기의 재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재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

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등 참고).

또한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7. 1.자 약정 당시 작성된 약정서(갑 1호증)에는 '피고 A는 원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시점에 원고가 인수하였던 위 주식 전량을 1주당 5,000원(총 6억 원)에 책임지고 매수할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약정의 체결 경위, 그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은 피고 A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는 자기주식취득 약정에 해당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A는 피고 B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고,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2013. 7. 1.자 약정은 피고 A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 B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하고 원고는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므로 상법상 금지되는 자기주식취득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2013. 7. 1.자 약정이 상법상 금지되는 자기주식취득 약정이 아니라거나, 피고 A의 계산이 아니라 피고 B가 지정하는 제3자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2013. 7. 1.자 약정은 상법에서 금지하는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다.

나. 2014. 4. 1.자 약정에 따른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시의 이 사건 실시협약 해지로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자, 피고 B는 새로운 사업주체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피고 A의 주주 구성을 단일화하기 위해 피고 A의 모든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4. 1.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6억 원에 양도하고 그 다음날 피고 A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약정에서 정한 매매대금 지급기일인 2014. 10. 31.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6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4. 1.자 약정은 새로운 사업주체가 피고 A의 주식 등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 피고 A의 주식 등의 매각이 실패하였

으므로 2014. 4. 1.자 약정은 실효하였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사업주체를 물색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피고 A의 주주단일화를 위하여 피고 B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의 2014. 4. 1.자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약정의 문언 및 그 체결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2014. 4. 1.자 약정이 새로운 사업주체가 피고 A의 주식 등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거나 위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 약정이 실효되는 것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6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도과 후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이 송달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B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정수진

판사 정지영